

무 급 전 임 자 임 금 지 급 세 칙

2011년 12월 23일 제정 2016년 1월 29일 개정 2017년 1월 18일 개정 2019년 3월 20일 개정
2022년 3월 30일 개정

현행안	개정안
제 1 장 총칙 제1조 (명칭) 본 세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위아지회 (이하 '지회') 무급전임자 임금지급 세칙이라 칭한다. 제2조 (목적) 본 세칙은 규칙 제50조(신분보장)에 의거 무급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원활한 조합 활동을 보장 하기 위함이다. 제3조 (지급대상) 1. 지회장이 추천한 자 (단, 집행위원에 한함) 2. 조합 및 상급단체에 피임, 피선된 자 제4조 (심의기구) 1. 지회장이 추천한자는 집행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. 2. 조합 및 상급단체 피임, 피선된 자는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. 제5조 (지급시기 및 기간) 1. 본 세칙 제3조(지급대상)의 발생일로 부터 계산하여 조합원 과 동일하게 매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며 지급 기간은 사유가 소멸 된 날까지로 한다. 2. 급여지급 방법은 매월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급여통장으로 입금 한다 제6조 (기금의 설치와 운용) 무급전임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재원은 조합비2로 운영한다.	

현행안	개정안
제7조 (지급기준 및 방법) 1. 기본급은 조합원과 동일한 호봉표를 적용하며 호봉승급분 및 기본급인상분을 동일하게 반영하여 지급한다 2. 무급전임자에게 매달 통상임금 + OT25hr 지급한다. 3.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른다. 4. 집행위원 3명에 대하여 우선 배정한다. 5. 조합 및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금은 1명 분에 한하여 지급한다. 6. 5항 복수의 인원에 대해서는 1명 분의 임금을 분할해서 지급한다. (단, 기 파견자의 임금은 인정한다.) 제8조 (급여정산 및 소급) 매월 급여 정산 후 소급분 발생시 익월급여에 반영한다. 제9조 (결근 및 휴직시 급여) 결근 및 휴직시 단협과 임금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원과 동일하게 처리한다. 제10조 (징계시 급여) 1 조합 규약에 의거 징계 확정시 해당자는 해당 기간 만큼 임금을 지원하지 않는다. 2. 주휴,<u>년.월차</u>,상여금 등의 차감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 제11조 (년, 월차) 무급전임 기간은 조합원 기준으로 <u>년</u>, 월차 수당을 지급한다. 제12조 (법적관계) 본 지회의 조합비2기금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	제7조 (지급기준 및 방법) 2. 무급전임자에게 매달 통상임금 + OT25hr 지급한다. <u>(단, 안전교육 2hr/월은 기존고정 OT와 별도로 적용한다.)</u> 제10조 (징계시 급여) 2. 주휴,<u>연.월차</u>,상여금 등의 차감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 제11조 (연, 월차) 무급전임 기간은 조합원 기준으로 <u>연</u>, 월차 수당을 지급한다.

현행안	개정안
부칙 제13조 (시행) 이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14조 (제정 및 개정) 본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의 결의는 총회 (대의원회의)에서 결의한다. 제15조 (통상관례) 세칙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임금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.	제 2 장 부칙